

2023학년도 백양초등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계획』

I. 개요

1. 근거(관련 법령 등)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세부집행계획 수립), 동법 시행령 제2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지역계획 수립), 제6조(학교계획 수립), 제7조(평가)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7조(교육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2. 비전과 목적

비전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며 배우는 행복 공동체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된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행복한 어린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어린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율적인 어린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어린이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
①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계 구축 학교 안전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시스템 구축
②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 내실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중심 현장중심 안전교육 안착 체험중심 안전사고 예방능력 강화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장애학생 안전
③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 교육활동 안전성 강화 및 지원여건 구축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 교직원 대상 안전관련 연수
④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안전문화의 확산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학교시설 안전환경 개선

3. 학교안전 위험성 분석

가. SWOT 분석

강점 (S)	약점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 학교 주변환경 우수(후문과 연결된 옥빛공원 환경) 교사 구성원간의 친화력이 높고 소통이 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건물과 기자재 노후화 담장 넘어 중학교가 위치하여 학교폭력 노출 가능성이 있음 학교 출입문 앞 도로가 좁아 비상시 차량진입이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음
기회 (O)	위협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학교 지정운영 고양교육 변화의 중심 인성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의 학교에 관한 적극적인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의 증가 상가 밀집지역 문화시설공간의 부족 학교 주차공간 부족 및 학원차량으로 인해 교통안전 위협

나. 전략수립

1) 중점 추진과제 발굴

-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학교안전 관련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1-1 학교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조직 일원화(교무실)
 -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시스템 구축
 - 1-2-1 학교안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생활안전부)
 - 1-2-2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실시(생활안전부)
- 학생참여형 안전교육 내실화
 - 안전교육의 현장 착근
 - 2-1-1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생활인성.안전부)
 - 2-1-2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생활인성.안전부)
 - 2-1-3 실습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생활인성.안전부)
 - 2-1-4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 강화(생활인성.안전부)
 - 체험위주 안전교육 강화
 - 2-2-1 학생참여, 학교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생활인성.안전부)
 - 2-2-2 실제상황 가상의 맞춤형 대응훈련 시행(생활인성.안전부)
- 학교 구성원의 예방 능력 강화
 - 학교 구성원의 안전 역량 강화
 - 3-1-1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보건실)
-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 교육시설의 안전성 강화
 - 4-1-1 학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행정실/생활인성안전부)
 - 교육활동 안전성 강화 및 지원여건 마련
 - 4-2-1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 강화
 - 4-2-1-① 안전한 체험학습의 제도적 정착(생활인성.안전부)
 - 4-2-1-② 진로체험 활동 안전관리 강화(생활인성.안전부)
 - 4-2-1-③ 야외 수련활동 안전관리 강화(생활인성.안전부)
 - 4-2-2 안전 취약분야 사고 예방 강화
 - 4-2-2-①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 강화(생활인성.안전부)
 - 4-2-2-②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급식실/생활인성.안전부)
 - 4-2-2-③ 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담당자/생활인성.안전부)
 - 4-2-2-④ 장애학생 안전보호 강화(보건실)
 - 4-2-3 안전사고 대비 비상 대응체계 구축
 - 4-2-3-① 위기관리 매뉴얼의 정기적 수정 및 보완(생활인성.안전부)
 - 4-2-3-② 비상배낭 비치를 통한 안전사고 대비(행정실)
 - 4-2-4 심리치료 지원 및 연구.안전 규칙 강화
 - 4-2-4-① 정서행동특성 검사에 따른 관심군 관리 강화(보건실)
 - 4-2-4-② 안전사고예방 관련 심리적 치료체계 강화(보건실)
 - 4-2-4-③ 학교안전 관련 조례.규칙의 발굴 및 정비(생활인성.안전부)

5.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5-1. 학교안전 문화의 확산

5-1-1 학교 안전 의식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

5-1-1-① 각종 행사 시 안전분야 참여 및 공유.확산(생활인성.안전부)

5-1-1-② 매월 4일 각 교실, 특별실 안전 점검 및 안전 점검표 수합(생활인성.안전부)

5-1-2 학교생활 속에 스며드는 안전문화 조성

5-1-2-① 나침반 5분 안전교육으로 안전 생활화(생활인성.안전부)

5-1-2-② 학기초 '학교 안전주간' 운영으로 안전 문화 조성(생활인성.안전부)

5-2.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5-2-1 안전사고 처리 후 평가활동 강화(생활인성.안전부)

2) 교내 안전관리를 통한 교육환경 안전인프라 구축

과 제	세부 내용	비 고
교내 시설 안전진단 철저	- 학교 안전책임관 임명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준수 (비상열쇠, 식료품, 유해물질 관리 등) - 체크리스트 활용 안전점검 실시	학교 안전사고 대책반 월중계획 및 일지 반영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시설 및 안전관련 역량 강화	-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 - 교직원 안전관련 연수 이수 (학교안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전직원 15시간 이상 연수 참여
안전사고 사각지대 개선	- 외부인·방문객 출입 통제 (교내 차량통행, 주차관리 등) - 안심알리미 지원 및 활용 - 학원버스 안전지도 및 관리 (버스기사 안전교육 철저) - 교사·학부모·지역사회 교통도우미 운영 - 통합연계 CCTV 정기 점검 - 비상벨 정상작동 여부 확인 - 학교 안전생활 캠페인 실시	배우터지킴이 연계 관련사업 연계 행정실 연계 (교통법규, 승·하차 등) 등·하교시간 정상작동 및 녹화 기능 SKT지킴이 기능연계

3) 학생 안전교육 및 훈련 내실화

과 제	세부 내용	비 고
안전관련 지식 및 기능 향상	- 교육시간 확보 및 교육과정 재구성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준수) - 체계적인 교육으로 사고대응력 강화 - 가정 연계 안전교육 실시	학년별 교육계획 반영 (교과·창체 51차시 이상) 학교생활 안전 매뉴얼 활용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활용 제이티스쿨메신저 활용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 소방훈련, 재난대응 훈련 실시 철저 (학생·교직원 비상탈출, 대피훈련 등) - 학습방법 및 지도방법 다양화 - 해양 및 수상 안전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조 연 1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체험학습, 실습 참여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 학교폭력예방교실 운영 (전담경찰관, 가정폭력예방교육 등)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실시 - 기린마을 운영 (학생·학부모·또래중조 등)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8시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간 1회 전문상담가 및 공감활동 봉사자 운영
소수 학생 안전	- 유치원 원아 안전 관리 - 장애 학생 안전 관리	유치원 연계 통합학급 연계

4) 학교생활 안전 매뉴얼(교육부 2016.5. 3. 보급) 주요 내용

↳ 55개 상황별 대응절차와 행동수칙을 학생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안내

구 분	주요 상황	비 고
학교 내 활동	1 체육 활동 중 사고 2 실험·실습 활동 중 사고 3 외부인 침입 및 정전 <저녁돌봄교실> 4 승강기 사고	
학교 밖 활동	1 실내 체험활동 중 사고 2 산, 숲 체험활동 중 사고 3 농촌 및 갯벌 체험활동 중 사고 4 물놀이·수상 활동 중 사고 5 놀이공원 및 야영장 활동 중 사고 6 겨울철 스포츠 활동 중 사고	
폭력	1 학교폭력 2 성폭력 3 아동학대 4 유괴 5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 6 자살 징후 7 흡기 위험 8 학교 외부인 침입	
교통사고	1 보행 중 교통사고 2 버스 사고 3 전철·기차 사고 4 항공기 사고 5 선박 사고 6 자전거 사고	
감염 및 중독	1 감염병 2 식중독 3 유독물질 중독	
응급처치	1 응급상황 대처 및 119신고요령 2 더위로 쓰러졌을 때 3 코피가 날 때 4 화상을 입었을 때 5 상처에서 피가 날 때 6 발에 찔렸을 때 7 뱀에 물렸을 때 8 뼈가 부러졌다고 의심될 때 9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 10 심장이 멈췄을 때	
자연재난	1 태풍·집중호우 2 산사태 3 홍수 및 침수 4 강풍 5 풍랑 6 지진 7 지진해일(쓰나미) 8 대설 9 폭염 10 황사·미세먼지	
비상사태	1 화재 2 옷에 불이 붙은 상황 3 학교시설 붕괴 4 민방공 경보 발령 5 포탄, 미사일, 항공기 공격 6 화학무기 공격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7 생물학무기 공격 8 핵무기 공격	

5)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및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과 제	세부 내용	비 고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계 구축	- 학교 안전사고 대책반 구성 -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연락망 유지
복구시스템 정비 및 개선	- 외상 후 스트레스 자체 모니터링 실시 - 피해 보상 및 서비스 제공 - 교내 시설의 신속한 복구	담임 및 전문상담사 학교안전문제회 청구 검토 자체(행정실) 및 외부

II. 학교현황

1. 학교현황

학교명	백양초등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우) 1049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38(화정동) 백양초등학교				
전 화	031)971-0093	FAX	031)971-0096	홈페이지	http://www.baikyang.es.kr/
교 장	김*선	학교안전 책임관	이*진	행정실장	박*만

학교 현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	특수 학급	비고
	학급수	2	2	2	2	2	2	2	12	
평균학생수	16	16	21	19	22	22	20	6		
교직원 현황	2023.2.1. 현재 안전 관련 연수 이수율 현황 : 약80%									
	교장	교감	교 사		행정직		교육 공무직원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	0	3	14	2	0	0	10	7	24
시설 현황	학교평수	건평		교실수 (관리실포함)	실험실수	기숙사 유무	체육실 유무 (실내교실)	기타		
	11,499m ²	1,511m ²		33	1	무	유			

2. 학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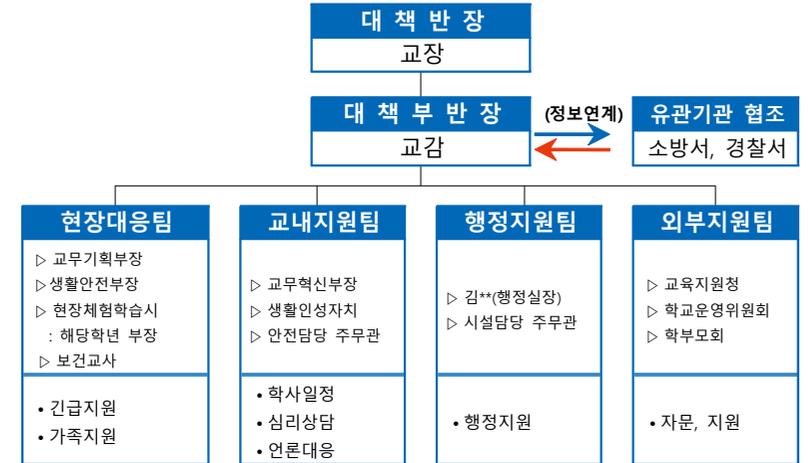
- * 교육지원실/행정지원실: 1층
- * 비상차량출입통로: →
- * 주변환경(옥빛공원): (사진출처: Daum 지도)

3. 학교 비상대책반 구성(학교 안전책임관 지정)

가. 학교 안전책임관 지정

구분	직위	내용
학교안전책임관	교감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총괄
학교안전부책임관	행정실장	시설안전관리 총괄
안전부장	부장교사	안전관련 업무 부장 - 생활 지도 등의 관련 부서와 결합

나. 재난 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 발생 사안에 따라 팀별 구성원은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음.

1) 팀별 추진업무

직 책		업 무
최초 발견자		- 육하원칙 의거 보고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대책 반장	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학교안전 책임관)	교감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론 일원화: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 대응반	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보건교사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당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응급조치 및 의료지원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 지원반	진로연구부장 행정주무관, 상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 직원의 개회,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당 필요 학생 상당지원 (필요시 외부지원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 지원반	행정실장, 행정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 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정재정 지원
외부 지원	교육(지원)청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2) 교직원 비상연락망 (별도 보관)

3)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기관	이름	연락처
국가재난정보센터	자연피해신고문의	02-2100-0769
국가재난정보센터	특정관리대상시설문의	02-2100-0494
고양소방서	고양소방서	119/ 1577-0193
고양경찰서	고양경찰서 화정지구대	112/ 031-962-7112

4) 비상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수단	보조수단	정전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유선	가두 방송	고양시
전파(내부)	학교 내 방송	음성방송	메가폰, 육성, 호루라기	방송실, 교무실

5) 비상 시 교직원 일반책무

직 책	임 무
학교장	<p>학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학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p>

사고지휘관 (교감/행정실장, 학교안전책임관)	<p>사고지휘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한다. ◦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한다. ◦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한다.(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와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 ◦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교사	<p>교사는 학생지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학생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 재난대응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서면, 교내방송, 인터콤,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한다.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 지시. ◦ 학생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의 학생의 인원 확인. ◦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부상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기본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보건교사	<p>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한다. ◦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기능직원 (건물관리 운영업체 직원포함)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원이)	<p>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한다.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밸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 ◦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한다. ◦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무직원	<p>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보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학교장과 재난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한다.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한다. ◦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한다.
급식/식당 서비스 담당자	<p>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p>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학생	<p>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아래의 행동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지정된 학생들은 이를 실행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대응훈련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재난 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 놓는다.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역량을 개발한다.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
학부모/보호자	<p>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도록 한다. 학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Ⅲ. 예방활동

1.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과 방과후 교육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동안 학교를 방문하는 자는 출입구에서(부재시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 방문)일일출입증 또는 일일방문증을 작성 후 패용하여야 한다.

<일반출입증-예시>

출입증 번호 2023-00 일반출입증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홍길동 백양초등학교장	2023.00.00. 백양초등학교장

<일일방문증-예시>

방문증 번호 2023-00 일일 방문증	방문객 준수사항 1. 교내에서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백양초등학교장	백양초등학교장

2.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 방문객은 출입구에 방문기록을 작성하고 일반출입증 또는 일일방문증을 작성 후 패용하여야 한다.

3.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 수령 방침과 절차

- 교직원의 개인, 사적인 물품을 학교에서 수령하지 않는다.

■ 식자재 수령 방침과 절차

구분	수령방법	수령절차	비고
농산물(김치류포함)	급식당일 담당자 직접수령	급식당일 아침 영양교사, 조리사, 학부모등 3명이상 한팀으로 전체 전수 검수로 수령함(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 기준 준수)	급식실
공산품	급식당일 담당자 직접수령 및 양념류는 선입		
축산물, 수산물	급식당일 담당자 직접 수령		
우유 및 음료	급식당일 담당자 직접 수령		

4.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현황(차량 및 보행 등하교생 등)

■ 중점 추진과제

1. 학생 안전 통학로 만들기
2. 「통학로 안전지킴이」운영
3.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 예방교육 강화

■ 세부 추진 계획

중점 추진 과제	추진내용	담당	시기
학생 안전 통학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교문 앞 통학로 300M이내 School Zone ○ 학생 안전 통학로 자체 점검 실시(학생 안전 통학로 자체 점검표 활용) ○ 단위학교 교통안전 지킴이 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 통학로 안전지킴이, 경찰관 등 - 역할 : 등하교시 교통 지도, 교통안전 예방 지도, 등하교길 보행 안내, 학교 주변 교통위험 시설 점검 ○ 지역경찰서 교통관리계 : 교통캠페인,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과속방지막, 보.차도분리대, 표지판 등) 안전진단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플리스 캠페인, 지구대별 아동안전지킴이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순찰 요청 - 시(군)청 교통시설계 :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 파손 시 유지, 보수 요청 - 시(군)청 건축과 : 통학로 주변 공사장이 있을시 관리감독 요청 	인성생활장진구부장	4월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 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교통도우미: 연중 매일 교통 안전지도 계획 운영 ○ 교통안전 예방활동 및 캠페인 활동 ○ 안전한 등하교(Safe-Zone)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학교 운동장 느티나무 입구 교직원 및 급식차량 이외 차량 통제 표지판, 플랜카드, 서행운행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한 통학로 운전법규 준수 홍보 ○ 통학로 사고예방 및 사후 대책 체제 구축 ○ 연 1회 교사 교통지도(캠페인) 등 운영 ○ 방과후 학교 결석학생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 ○ 등하교시 차량 운행(불법주정차)으로 인한 교통 안전 위협 요인 제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등교 자제와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 필요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요청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인성생활장진구부장	연중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 예방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교육 계획 수립 추진 : 아동복지법 제31조 ○ 교통안전 관련 기관(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강사 초빙 교육 및 사이버 교통학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교통학교(http://cyedu.koroad.or.kr) 	담당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교통안전지도 - 2개월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 학년별 교육과정 반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 대상 홍보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론편 내 교통법규 안내 및 학교내 차량 진출입시 교직원 교통사고 예방 철저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등 홍보 ● 교통안전 의식과 문화개선을 통한 교통질서 지키기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대상 회의 시 교통사고 예방 관련 내용 홍보 - 학부모 등과 연계한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현장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관련 안전수업에 활용 - 복도 게시판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게시 - 학교 홈페이지에 각종 교육자료 탑재 및 홍보 ○ 체험중심의 교통안전교육 권장 실시 ○ 자전거 및 통학버스 통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철저 ○ 철도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기 지도 ○ 학교별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파악 및 대처 방법 지도 ○ 각종 학부모 관련 회의 시 교통안전 교육내용 계도 ○ 등하굣길 교통안전의 날 운영 (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의 주도하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 지역주민과 연계한 각종 홍보활동 및 교통안전 행사 진행 		
--	---	--	--

5.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방침

- 비상 시 재난대응기관 등의 교정, 건물, 교실,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출입을 위해 행정실(비상배낭) 및 속직(당직)실에 비상열쇠를 1개씩 비치한다.

6. 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 관리 방침

- 교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행정실 및 교무실에 방문하여 아래 양식과 같이 차량출입증을 교부받아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비치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 및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한다.

7. 체육관 이용 시 안전지도 방침

- 체육관 이동 경로에서 미끄럼 방지 안전 지도 및 우천 시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한다.
- 체육관 내에서 교육활동 시 선 안전지도 후 학생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체육관 이용은 지도교사의 임장지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백양 학생자치회 회의와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체육관 이용 시간 및 임장지도 교사를 배치한다.

<일반차량 출입증-예시>

차량 출입증 번호 2023-00
차량 출입증(일반)
00가 0000 / ~ 2023.00.00 까지
백양초등학교장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차량번호 : _____
유효기간 : _____
2023. 00. 00.
백양초등학교장

<일일차량 출입증-예시>

차량 방문증 번호 2023-00
차량 출입증(일일)
이 차량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백양초등학교장
방문객 준수사항
1. 차량 출입증은 차량의 우측 하단에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양초등학교장

<승용차 요일제 의무적 실시(끝번호 요일제)>

운휴일	월	화	수	목	금	비고
운휴차량 끝 번호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9번	5번, 0번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7. 보관구역(식료품, 유해물질, 장비, 약품 등) 관리 방침

■ 식료품 관리 방침

구분	보관장소	보관방법	관리방법
곡류(쌀)	조리실내 식품창고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응달	식품위생법 관리기준에 의거 매일 확인 체크함
양념류(실온)	조리실내 식품창고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응달	
양념류(냉장)	조리실내 워크인 냉장실	온도 5℃ 이내 보관 유지	
기타 식품	조리실내 냉장고	온도 5℃ 이내 보관 유지	

▣ 유해물질 및 과학실 장비(약품) 관리 방침

1. 과학실험 폐수 및 폐시약 처리

가. 용어 정의

-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 실험실 폐수 : 실험실에서 실험·실습 후 발생한 시약이 포함된 물
- 하수 :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 오수 :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여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화장실·목욕탕·주방 등에서 배출하는 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폐시약 : 보관 중인 각종 시약 중 사용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올바른 화학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후 시약

나. 학교에서의 실험실 폐수·폐시약 처리·보관 방법

- 폐수통 준비 : 20L 크기의 용기를 준비하여,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폐수통”이라고 표기
- 실험 후 폐수 수집 요령

- 발생 폐수를 한 개의 통에 함께 보관한다.
 - 실험실 폐수는 대부분이 원액이 아닌, 희석된 폐수이므로 폐수 종류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통에 함께 보관한다. 만일 원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물로 어느 정도 희석시켜 폐수통에 버린다.
- 폐수를 소량씩 천천히 폐수통에 붓는다.
 - 폐수를 폐수통에 버릴 때는 이미 폐수통에 있는 다른 폐수와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량씩 천천히 붓는다.
- 실험에 사용한 초자기구를 1~2회 정도 세척한 물도 폐수통에 버린다.
 - 실험에 사용한 비커 등의 실험기구(초자기구)는 시약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척 시 세척한 물도 폐수통에 모은다.

○ 시약병 처리 방법

- 유리로 된 시약병
 - 시약이 조금 남아있는 것은 물로 희석을 하여 폐수통에 버리고, 빈 시약병은 여러 번 세척하고 세척한 물은 폐수통에 버리고, 세척한 병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 플라스틱으로 된 시약병
 - 유리시약병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폐수 보관

- 실험실 폐수는 반드시 폐수통에 보관한다.
- 폐수통은 분기별 위탁처리 될 때까지 지도교사의 책임 하에 학생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철저히 한다.

- 폐시약 보관 : 학생들의 손이 닿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한다.

다. 실험실 폐수 및 폐시약의 처리

- 폐수 및 폐시약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수거 처리
 - 보관물량 사전 조사 : 2023년 7월, 12월 중(교육지원청)
 - 수거처리 : 2023년 7월, 12월(교육지원청). (별도 공문 발송)
 - ※ 처리시기까지 폐수 및 폐시약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 요망

- 폐수통 구비
 - 20L 플라스틱통을 실험실 당 1개 이상 구비(적색으로 ‘폐수통’ 표시)
- 폐수 보관
 - 실험·실습시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통에 함께 모아 수집 보관
- 폐시약의 보관
 - 처리할 폐시약을 학생의 손이 닿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 폐수 및 폐시약 처리
 - 위탁처리 업체에 위탁 일괄 처리(추후 교육지원청 공문발송)
- 폐수·폐시약 처리 결과 보고
 - 수합장소에서 처리확인서 작성 제출

2. 과학 실험실의 안전 관리

가. 일반적인 주의 사항

- 과학 실험실에서는 여러 종류의 실험 기구와 시약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을 다루게 된다. 또한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다수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실험 학습은 항상 안전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실험실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법칙은 항상 주의하는 것뿐이다. 실험을 할 때에는 어떠한 것이 위험한가를 알고 적절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호물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실험실 안전 장비
 - 실험복, 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안전장구 비치 활용(최소 1학급용)
 - 소화기, 모래주머니, 눈 세척기, 비상사위기, 밀폐시약장, 환풍기 등 안전설비 구비
 - 독극물 상자 잠금장치 및 각종 해충의 방제 장비
- 소방서, 병원, 119 구급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게시

나. 실험 수업에서 주의할 사항

- 수업 전 주의사항
 - 실험의 종류에 따라 먼저 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 교사의 지시 없이 함부로 시약의 맛을 보아서는 안 되며, 시약의 냄새를 맡고자 할 때에는 손으로 부채질하여 소량 맡거나, 맛을 볼 때는 종이에 묻혀서 맛을 보도록 한다.
 - 구급약품이나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수업 중 주의사항
 - 시약 병에서 시약을 덜어낼 때는 반드시 라벨을 확인한 후 깨끗한 용기에 덜어 내는 데 필요 이상의 양을 취하지 말고, 쓰고 남은 시약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원래의 시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3. 교사 안전실험지도 연구

가. 목적

교사안전실험 연구 활동을 통해 탐구 학습 지도 능력을 향상 및 실험 안전지도 능력을 향상 시켜 탐구 중심 과학학습으로 개선하여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높인다.

나. 방침

- 1) 학년별 필수 실험 종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2) 3,4학년 담임교사 및 5,6학년 과학전담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 3)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안전실험지도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전달 연수를 실시한다.
- 4) 연수는 필요시 수시로 하며 유인물 및 사이버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운영

- 1) 과학과 학년별 영역별 필수실험 주제 선정하여 실험한다.
- 2) 과학실험 기구조작 및 시약 취급 요령을 익힌다.
- 3) 과학과 탐구중심의 실험방법을 구안하여 실행한다.
- 4) 실험실 안전관리 방법 및 폐수처리 과정을 익힌다.

■ 메이커스페이스 관리 방침

1. 메이커스페이스 안전 관리 체제 강화

가. 메이커실 안전 관리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별도 계획 또는 학교운영계획서, 메이커 운영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수립

나. 메이커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메이커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메이커실 내 안전관리 요령 및 수칙 비치(학교내 무한상상실 안전 매뉴얼 참고)

다. 메이커실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 매월 1회 메이커실 안전 자체점검 실시
- 안전한 3D프린터 사용을 위한 3D 프린터 가이드라인 준수

라. 비상연락체계 구축

-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연락체계 구축
- 대상: 가장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병원(지정병원), **관할지자체 해당과, 지방환경관서(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2. 학생 메이커스페이스 안전교육 강화

가. 메이커교육 시작 전 “5분 안전교육” 생활화

- 당일 활동과 관련된 안전 교육 실시 후 본 메이커실습 진행
 - ※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 시 사전 안전교육 생활화 및 현장 지도 철저
- 교육과정 내 메이커 실습 안전 관련 별도의 시간 편성 및 운영

3. 교원 메이커스페이스 안전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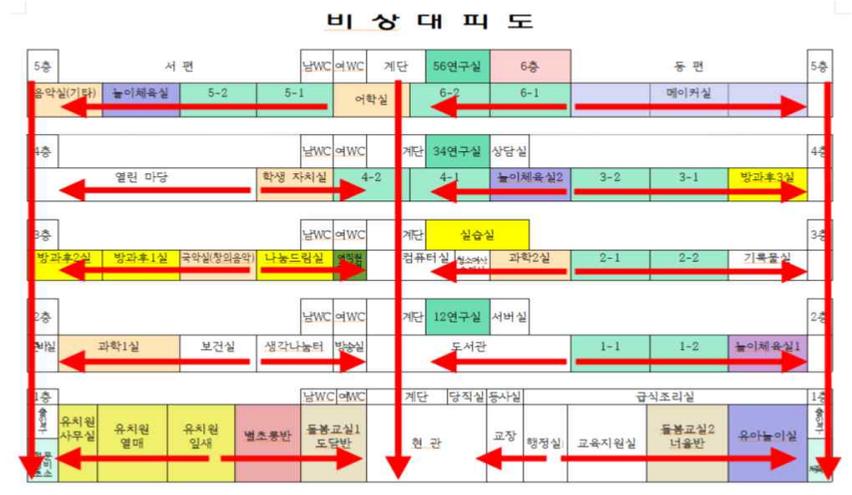
가. 메이커 안전 관련 자체 연수 실시

- 전교직원 대상 메이커실 안전 관련 연수 실시 (연2회 이상, 메이커실 사용 외부강사, 방과후강사 포함)
 - 메이커스페이스를 둘러보며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보는 활동 포함
- 전교직원 대상 안전 교육 연수 시 도구안전 및 실습안전, 사고시 대처 활동 관련 내용 포함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과협의회 활동 시 수시 안전 교육 연수 권장

8. 비상탈출구, 2차탈출구(창문) 안전관리

- 재난 발생 시에 비상대피로 집중되는 이용자의 밀도를 달리하기 위해 건물 1층과 옥상문을 비상 시 2차 탈출구로 사용한다.

9. 비상대피로



10. 방과후 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 방과후 안전관리 계획

- 가.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 담당 학급 교사는 퇴근 시 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 나. 학부모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방과 후 학교 변경 사항 발생 시 가정으로 수시 연락
- 다. 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시 근무자 및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비상연락망 비치
- 라. 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시 방과후 교실 점검표 및 순찰 일지 비치
- 마. 학교와 강사는 문자 서비스(SMS) 제공, 학교 배움터지킴이 활용 등 적극적인 학생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한다.
- 바. 방과후학교 운영교실의 소화기 및 인터폰을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 차단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사. 학교 인근 경찰 지구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방학중 안전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한다.

11. 돌봄교실 운영 현황 및 안전관리

■ 돌봄교실 운영 현황

학교명	돌봄유형	학년	학급수	학생수	전용교실수	구축년도
백양초	돌봄교실1 (도담반)	1학년	1	16	1	2010
	돌봄교실2 (너울반)	2학년	1	17	1	2014

■ 돌봄교실 안전관리 계획

- 가.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의 내실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 나. 매일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다. 매일 1회 시설 및 환경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라.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주변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마. 낮은 학교는 부모 동행 귀가지도를 권장한다.

▣ **담당교사 및 돌봄 강사 안전 관련 계획**

가. 담당교사 및 보육전담사의 안전교육(시설안전, 교통안전, 교육활동 중 안전교육, 교재교구 안전사용 법 등)에 관한 사전 연수

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 방법 연수 및 매뉴얼 숙지
다. 학생 비상연락망 및 귀가 동의서 등의 안전 대책 강구

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관찰 및 지도

마.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철저

12.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관리 및 검토

- 학급 담임이 직접 청구관리한다.

13.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

▣ **학교 안전교육 세부 추진계획(2023)**

중점활동	추진 내용	목표	대상	시기
안전교육	학교안전계획 작성	1회	전체계획	2월
	학교안전계획 관련 교직원 연수 실시	1회	교직원	3월
	안전교육 연간계획 수립	1회	1-6학년	2월-3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대 안전교육 운영	연중	1-6학년	3월-2월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활용 교직원 연수 실시	1회	교직원	4월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활용 교육	연중	1-6학년	3월-2월
안심알리미 서비스	안심알리미 서비스	1회	담당기관	3월
	교통안전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2회	1-6학년
CCTV활용	CCTV 설비의 지속적인 관리	연중	교사	3월-2월
심폐소생술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1회	5-6학년	3월~12월

▣ **교육 과정을 통한 안전 교육 강화**

가.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을 통한 안전 교육 관련 교육 철저

- 1) 교과 교육과 안전 교육 연계 지도
- 2)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학교 시설,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 등 안전교육 실시
- 3) 화재 시 대처요령 등 각종 재난 시 안전행동요령을 반드시 실습 교육으로 실시
- 4) 각종 안전 교육 관련 시청각 자료 활용
- 5) 실험·실습 시 유해위험물 취급 요령 지도 및 안전 수칙 교육 실시
※「실험실 안전 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kisco.or.kr)참조

나. 행사 및 참여를 통한 안전 교육

- 1) 글짓기, 그림 그리기, 표어 짓기, 나의 주장 발표회 등
- 2) 학급회의 시간 활용 토론회 개최

다. 교통안전 교육 철저

-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지도
- 2)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시간 확보

3) 교사의 연수기회 확대와 교육자료 보급

4) 현장 지도 및 실습 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철저

5) 안전 관련 유관 기관 연계 활동 : 전교생 교통안전 교육(고양경찰서 연계)

라. 체험 학습 및 각종 학생 수련 활동 시 사전 안전 교육 강화

1) 수련 활동 계획 수립 시 안전교육 내용 삽입

2) 각종 체험활동 및 수련활동 시 사전 안전교육 실시

3) 견학 장소 및 야영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4) 담당 지도교사 임장 지도 철저

- 야외 단체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교사와 사제동행으로 실시

마. 교육 과정에 안전 유관 기관의 활용

- 안전 일반 : 한국산업안전공단

- 교통안전 :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 소방 안전 : 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사)

- 전기, 가스안전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시설물 안전 : 시설안전관리공단

바. 물놀이안전, 각종 행사, 체육활동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은 세부 운영계획시 별도 지침 계획을 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14.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계획**

가. 학교장 또는 업무담당자

구분	내 용
활동 전	-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한다. - 인솔책임자와 인솔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임무를 배정한다. - 학생들에게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수련시설,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필요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에 일정을 통보하여 위생, 안전점검을 요청한다. - 모든 체험활동에서 시행 전 현장답사 여부 결정, 지도교사의 임장지도, 보험가입 여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 음주감지 등 운송 수단별 안전수송에 유의한다. - 차량 계약 시 정기검사표, 점검기록부 및 차량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숙박 계약 시 해당업체 건물의 배상보험,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방문국의 금기사항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특히 유해환경요소 출입금지 지도를 강화한다.
활동 중	- 사고 발생 즉시 구조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정해진 처리요령에 따라 대응한다. - 위약으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실시한다. ※ 참가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 확인 제외 대상이며 만 9세~24세 해당(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함)
활동 후	- 인솔교사는 모든 교육활동 장소에서 임장 지도한다. -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정산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학생 및 인솔교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 후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활용한다. -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들의 후회 활동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인솔 및 지도교사

구분	내 용
활동 전	- 안전사고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한다. - 교통안전지도, 수상안전지도, 화재예방지도, 위험시설 환경으로부터 안전지도, 질병 예방지도, 성범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답사 시 위험시설 및 유해환경에 대한 사전점검을 한다. - 신체 허약자 또는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여 특별 관리한다. -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현장체험학습 차량 보호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 전·후면에 부착한다. - 차량이나 시설 사용 전에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가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한다. - 위험한 물건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알리고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입해수련 및 수상활동 시 수상 안전교육을 철저히 한다. - 시설 및 숙박시설의 화재안전 대피시설 관리 및 소화기, 비상구 확인점검을 한다. -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 경로 게시 및 관리요원 대피교육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활동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에 임장지도하고,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 수시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는 지도 역할을 분담하고 점검한다. - 시간발생 즉시 구조요청 및 응급처치를 한 후 피해 학생을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한다. - 동일 원인(동일음식)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유사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학교장에 보고한다. - 공항, 터미널, 여객선 선상 등에서의 안전 및 생활지도에 노력한다. -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대열운행 금지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활동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안전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장체험학습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되새겨 보도록 사후 지도를 한다.

다. 학생

구분	내용
활동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에 참가하여 대응 요령을 충분히 숙지한다. - 과도한 현금, 귀중품, 휴대금지물품(휴기, 주류, 담배, 도박도구 등)을 소지하지 않는다. - 인솔 및 지도교사의 연락처 및 응급구조번호를 숙지한다. -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 인솔자 및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사고 발생 시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에 따른다.
활동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차량운행 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하고, 차량 밖으로 손, 얼굴 등을 내밀지 않는다. -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속도 내 기물을 훼손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승하차 시 집합 시간을 반드시 지킨다. -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 새롭게 형성된 인간관계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행일기, 포트폴리오 등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활동 내용을 되새겨 보도록 한다.

라. 학부모

구분	내용
활동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안내 자료를 숙지한다. - 휴대금지 물품을 확인하고 자녀의 물품을 함께 준비한다. - 자녀의 특이 사항을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알린다. - 가정용 도시락 또는 외부 도시락을 준비할 경우 위생 안전에 유의한다.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수립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참여 가능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체험활동 참가 신청서 및 동의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한다.
활동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솔 및 지도교사의 연락처를 숙지하여 사안 발생 시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활동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건강상태 및 친구관계를 관찰함으로써 학교생활의 변화를 점검해 본다.

6. 안전 점검 및 응급 조치

- 1) 상황 별 안전 점검 및 응급 조치 인지 및 학생 교육 실시 <첨부5 참고>
- 2) 응급치료 계획

1차 응급치료	2차 병원 수송
*의무실 구급약품 *119 구급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외 주변 응급실

- 교통사고 발생 시 인솔 교원은 소방서(119) 및 인근 경찰서(112)에 즉시 연락
- 동료 인솔교원, 학교장, 교육청에 즉시 보고
- 부상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림
- 비상 상비약 및 구급약품 준비
- 내용물과 약품사용 방법을 전면에 부착
- 요보호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차량 좌석배치 시 멀미 우려 학생을 배려

3) 코로나19 관련 방역 사항

- 버스 자체 방역 점검
- 손소독제 구비 및 체온계로 체온 확인
- 관련 증상 있을 시 별도 공간에서 대기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 조치하도록 함

4) 비상연락망

: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즉시 연락가능하도록 조치함. (학교종이 시스템 및 교육지원실 지원)

■ 생존수영 운영시 안전 관리계획

- 가. 생존수영 계약 및 교육 실시 전 체육부장에 의한 사전답사 실시
- 나. 교육 전 반드시 수영시설(수심 확인), 강사 자격여부, 안전요원 배치 등 확인

- ▶ 비상 시 응급체계 및 구조체계 사전 확인
- ▶ 안전장구(구명조끼 등) 반드시 착용

다. 생존수영 교육 전 학생들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 실시
- ▶ 수영 전 학생 건강상태 파악 및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 ▶ 건강상태 상 생존수영교육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참관 등 **대체 교육 실시**

라. 생존수영교육 운영 시 담임교사는 반드시 수영장 안에서 임지도도 실시

- ▶ 수중 혹은 수영장 풀 사이드에서 수영 교육 참여 학생 지도 및 안전 점검
- ▶ 수영장 이용 수칙을 반드시 교육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 ▶ 초등학생 대상 수영교육에 적절한 수심(0.9~1.2m), 안전장구 착용

마. 유자격 전문강사, 담임교사 협력 지도로 생존수영교육 내실 운영

- ▶ 학생 수 대비 지도강사, 안전관리요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
- ▶ **학생 교육 시 주의 태만하거나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협의**

바. 버스 승하차 이동 및 수영장 내에서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 ▶ 수영장으로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 ▶ 차량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차량 탑승 전·후 안전교육 등

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 ▶ 학생·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SM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 ▶ 사안 발생 즉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 후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보고

사. 생존수영교육 실시 수영장 수질 안정성 확보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별표6)' 의 수영장업 수질기준〉

-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
- (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 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 유리잔류염소는 0.4mg/l부터 1.0mg/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탁도는 1.5 NTU 이하이어야 한다.
 -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mg/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당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는 0.05mg/l 이하이고, 수은은 0.007mg/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아.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 ▶ 수영장 실내(탈의실, 샤워실, 대기 장소 포함), 교구(구명조끼, 키보드) 등 소독·방역 사전 확인
- ▶ 외부 수영장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간 거리 유지(차량 내 포함)
- ▶ 일반인 수영장 출입자와 동선 확인 후 접촉 최소화
- ▶ 수경, 수영모, 수영복, 수건 등 개인 사용 물품 대여 및 공유 금지

단계	운영 방안
교육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장소 내 체온계, 비누, 손소독제 비치 현황 확인 □ 건강 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확인 □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5분 교육(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안내) □ 탈의실 사용 시 거리 두기 및 시차제 적용으로 대인 간 접촉 최소화 ※ 수영장 출발 전 수영복 미리 갈아입기 등 □ 수영장 바닥에 침을 뱉지 않도록 사전 교육
교육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 전까지 마스크 착용 상태 유지 □ 학생 간 충분한 거리 유지 □ 학생 간 접촉을 피하도록 개별 연습 모형으로 교육 전개 □ 수업 진행 시 감염 유발 행동(근거리 설명 및 접촉) 금지
교육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확인 □ 건강 상태 이상 학생 발생 시 즉각 학교 내 보고체계에 따른 조치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보건소나 1339 신고 등) □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손 씻기, 샤워 지도 □ 샤워실, 탈의실 사용 시 거리 두기 및 시차제 적용으로 대인 간 접촉 최소화

■ 안전교육 및 주제교육 내실화(2023학년 교과 및 창체 연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영역 (안전교육 7대 표준안 + 아동복지법 + 기타 법령)	시수
<생활안전> 12차시 이상(법2+10)(학기당2회 이상)	12
※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매년 2시간 이상	2
※학년군별 경기도안전교육과정 자료 참고	10
<교통안전> 11차시 이상(법10+1)(학기당 3회 이상)	11
※법: 교통안전교육, 연간 10시간이상(2개월에 1회 이상)	10
※학년군별 경기도안전교육과정 자료 참고	1
<폭력 및 신변안전> 52차시 이상	52
※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시간(사이버폭력 예방교육 2차시 이상)	11
※법: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연간 8시간 이상(6개월에 1회 이상)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연간 20시간 이상 확보	20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매년 1회 1시간 이상	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예방교육(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4
※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연간 6시간 이상 권장	6
※법: 실종 유괴의 예방 방지 교육, 연간 10시간 이상(3개월에 1회 이상)	10
<약물 및 사이버중독> 12차시 이상(학기당2회 이상)	12
※법: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 남용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연간 10시간 이상(3개월에 1회 이상)	10
※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학기당 1회 이상	2
<재난안전> 6차시 이상(법6)(학기당 2회 이상)	6
※법: 재난대비 안전교육, 연간 6시간 이상(6개월에 1회 이상)	6
<직업안전> 2차시 이상(학기당 1회 이상)	2
※학년군별 경기도안전교육과정 자료 참고	2
<응급처치> 2차시 이상	2
※학생건강과: 6학년 이론+실습: 2차시 이상 ※학생건강과: 5학년 이론 또는 실습: 1차시 이상	2
합계 (97시간 이상)	97

3가지
최소시수
97시간

안전교육
7대 표준안
(12,11,8,
10,6,2,2)
51시간
아동복지법
5대 영역
44시간
(파란색)

기타 법령
22
(보라색)

<안전교육과정 자료>
www.schoolsafe.kr

IV. 대비활동

1. 재난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배포와 실제 훈련

■ 학교 재난대응 안전훈련 강화

가. 학생 참여 및 학교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계획의 수립

- 학교는 위험성 진단결과와 취약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사고를 대비한 학생 참여 등 맞춤형「재난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훈련
- ※ 학교현장 실천대비 '재난대응 훈련 가이드'를 참고
- 재난대응 훈련계획을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소방관서 등과 공유를 통해 재난발생시 신속한 연계·대응체계 유지

나. 실제 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대응훈련 시행 및 대피로 확보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2회 이상 실제훈련 실시
 -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진단하는 학생중심 안전훈련 추진 (학교 급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훈련 추진)
 - 체험위주의 학생·현장 중심의 안전 훈련 실시
- 이론 및 메시지 행정에서 탈피, 현장지원 대책과 몸으로 체험하는 실질적 훈련 기반 마련(소화기 사용법,

대피호 위치 확인 등)

- 재난 취약학생(유아·특수) 대피 및 훈련 강화
- 안전생활 습관화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 학생 참여 강화
- 주입식 훈련을 탈피, 체험 위주의 다양한 훈련 방법 적용
-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상황보고 및 전파 훈련 강화
- 상황별 재난 단계별 교직원 상황 판단 및 보고, 조치능력 강화
- 학교장 중심의 교직원 상황판단 회의와 실제훈련 병행 추진
-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협업 대응능력 강화
- 비상차량 이동 동선 점검 및 확보(불법주정차, 시설·구조물 이동 등)
- 교실 등 실내의 복도, 계단 등 이동 통로에 상시 적치물 철거
 - 교실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냉장고, 예비책상 등을 복도나 계단 등에 비치(방치)하여 비상시 이동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 철거
 - 소방 법규나 지침에 위반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 및 시설보강
- ※ 발생 가능한 각종 사건·사고 유형별 학교의 대응 표준절차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예정(교육부, 무단침입/인질극, 교내의 폭발사고, 폭파위협 등)

2. 비상 배낭 마련과 관리

-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교실배치도, 학생과 교직원 명단, 화재경보기 작동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등이 담긴 비상배낭을 행정실에 비치하여 보관·관리한다.

V.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1. 비상 커뮤니케이션(재난대응 기관, 교육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예시: 무단침입/인질극>

무단(불법)침입/인질극

■ 목적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 내에서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발견하였다거나 인질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학교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교내에서 폭력을 휘두를 것으로 보이는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만나거나 보게 된 모든 교직원들은 자신들이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질극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다.

※만일 불법침입 또는 인질극 발생으로 인해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경우, 사건현장에 관한 법적 지휘권을 가진 경찰의 지시를 따르고 이들과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책임

- 모든 교직원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사전에 받아 놓아야 한다.
-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학교전담경찰관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른다.
- 가. 무단침입
 - 교직원이 무단침입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교직원들과 동행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에게 점잖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임을 밝힌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왜 방문했는지 묻는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비실(또는 행정실)에서 방문일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이들과 동행하여 경비실(또는 행동실)로 이동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의 학교 방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에게 학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
-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동행한다.
-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무단침입자가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교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이들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들과 만난 당시의 상황(이들을 발견한 장소, 이들의 인상착의, 이들이 소지한 무기(흉기) 또는 (소지품)을 파악한다.
-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무단침입자와 시각적 접촉을 유지한다.
- 학교사고지휘관/학교장 또는 경찰(112)에 학교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무단침입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한다(되도록이면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무단침입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은 교육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락다운을 발령한다거나 상황이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실행한다.

나. 인질극

- 인질극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잡혀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질(학생)의 안전이다. 교직원 등은 인질들이 학교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야 한다. 모든 교직원들은 인질극이 벌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 만일 인질극을 벌이는 자가 당신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끼어들지 않는다.
-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이나 학교보안관(이들에게 인질극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112 경찰신고)에게 인질극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 라.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인질이 된 경우
 - 인질범의 지시에 따른다.
 - 인질이 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생들이 있는 경우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인질범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인질범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 인질범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말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이들과 언쟁을 벌인다거나 어떤 제안을 하지 않도록 한다.

마.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

- 즉시 112에 신고한다. 인질범의 수와 인상착의, 인질극이 벌어진 정확한 장소, 학교가 취한 조치(락다운 또는 폭발물을 소지한 인질범에 의한 대피) 등과 같은 상세한 상황을 알려준다. 인질협상팀에게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 락다운 또는 상황에 적합한 필요 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 건물 바깥에 위치한 교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을 학교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한다.
-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격리시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질범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교육장에게 인질극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시킨다.
- 인질범과의 협상을 위한 팀이 도착하는 경우, 이들에게 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다.

-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바. 교사와 직원

- 교직원은 락다운 또는 지시가 내려진 절차를 실행한다. 만일 학교 건물 밖에 있는 경우 학생들을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 후, 지시를 기다린다.
- 모든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출처 : 「학교 현장 실전대비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행 가이드」)

2. 장애학생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안전 지도 계획

1. 목적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유형을 알고 안전사고 예방법을 익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개념이해와 예방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2. 세부지도 계획 일정

주 제	내 용	시 간
학생 관찰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교우관계 및 행동 성향 파악 • 통합학급 학생상담 • 특수교육대상자 상담 • 특수학급 특성상 수업 및 쉬는 시간 특수교육대상자간 의 괴롭힘 사실관계 파악 및 사전 예방강구 	상시
학교 안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 안전 • 운동장에서의 안전 • 복도에서의 안전 • 실내에서의 안전 	관련 교과 시간 지도 통합학급· 가정과 연계해 지도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승차, 하차할 때 한 사람씩 차례를 지키기 • 반드시 버스 승차 후 안전벨트 매기 •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안전벨트 풀고 내리기 • 쓰레기는 준비해 온 봉투에 넣기 • 버스 하차 시 좌우를 살펴가며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리기 • 화장실 갈 때 선생님과 함께 다니기 • 점심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기 	관련 교과 시간이나 아침 활동 시간을 이용해 교수
교통 안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길 • 도로 횡단 안전-좌우 살피 및 건물목, 육교이용 생활화 • 통한 교통사고 예방 • 탑승 안전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쓰기지도 	관련 교과 시간 지도 통합학급· 가정과 연계해 지도
생활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안전 • 가정 내 안전(전기기구 안전 등) • 물놀이 안전 • 각종 놀이 안전 	관련 교과 시간 지도 통합학급· 가정과 연계해 지도

▣ 특수교육대상자 교출 학생 발생 시 비상 탐색조 운영 계획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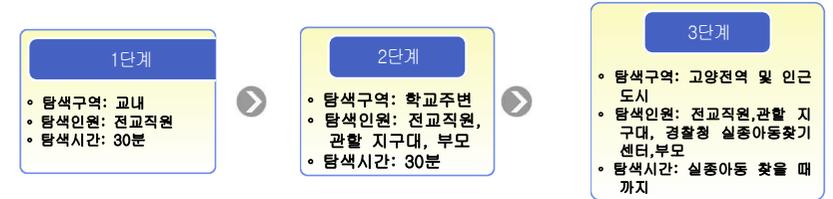
장애학생의 교출 발생 시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교출 학생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탐색 발견하여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2. 방침

- 전 교직원(1~6팀은 각 학년 담임들로 구성, 7팀은 특수, 전담, 유치원, 사서로 구성하고, 8팀은 행정실 직원으로 구성한다. 교장과 교감은 상황을 지휘 통제한다.)으로 편성한다.
- 담당 구역을 정하여 지역별로 탐색한다.
- 지역사회 유관 기관(고양경찰서 및 관내 파출소, 관내 주민자치센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 교출 가능한 학생의 명단을 사전에 안내하여 전 교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이동 시 각 통합학급 도래 아동이나 특수교육지도사가 동행하여 학생 실종을

예방한다.

- 통합학급 시간표가 변경됐을 경우에 통합학급 담임은 사전에 특수교사에게 알린다.
 - 수업시작 5분이 경과해도 학생이 특수학급 수업에 오지 않을 경우 통합학급 담임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위치를 확인한다.
 -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이동 시 학생이 실종됐을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3. 세부 추진 계획
- 교출 학생 발생 시 대처 단계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 학교 안전지도 계획

1. 교내 방과후학교 교출학생 예방 및 대처 방법

가. 방과후 수업 참여 학생 인계 확인(담임-강사 간)

나. 방과후 수업 강사는 수업 시작 5분이 지나도 학생이 오지 않을 경우 담임에게 연락을 한다.

다. 방과후 수업 강사는 방과후 수업에 결석학생이 있을 경우 담임에게 연락하여 결석사유를 출석부에 기록한다.

라. 학생이 강사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 최초 연락체계 구축(특수학급담임, 방과후부장 등)

- 1) 학교 방과후 강사는 인지 즉시 방과후부장 및 특수교사에게 연락하고 최초 연락을 받은 교사는 교출 학생 탐색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속한 방과후교육 강사는 교실에 통합학급 담임, 특수학급 담임, 방과후 담당 교사의 연락처를 비치하여 신속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실종 및 사고 위험학생 안전관리 철저

- 1) 교출 학생이 발생할 경우 최초 인지자는 교출 학생 탐색 절차에 따른다.
- 2) 사고 위험학생에 대해서는 아동의 특성을 방과후 강사에게 사전 지도하여 유의하도록 한다.
- 3)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특수학급 교내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의 학년 반, 이름 및 아동의 특성을 방과후 강사에게 사전 교육하도록 하여 지도 시 유의하도록 한다.

VI. 복구 활동

1. 외상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서비스

미국 정신의학회(1995)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특정 사건,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극심한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함으로써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 증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주로 약물 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약물치료는 주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해 불안과 우울로 인한 증상을 완화해준다. 또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쓰이는 프라조신 (Prazosin)이라는 약물은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악몽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된다. 정신치료는 주로 인지치료와 행동치료,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인지행동치료를 사용한다. 인지치료는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해 가진 비현실적 믿음과 비논리적 추론을 스스로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가르치고 돕는 치료법이다.

행동치료는 학습이론에 근거해 환자가 자기 행동을 관찰하여 분석한 뒤 문제행동을 바꿔나갈도록 돕는 치료법이다. 이는 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증가시키고 그렇지 못한 행동들은 줄이며 부족한 행동을 가르쳐

서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도록 대처방법을 익히게 한다. 이밖에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과 함께 사고를 같이 경험한 사람들과 집단치료를 하면서 서로 지지를 주고받는 것이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 심각한 사고나 정서적 외상 경험한 후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고 판단될 때는 되도록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과를 찾도록 연결해주고 지역 상담실이나 상담소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2. 시설 복구

- 교육시설이 화재, 풍해, 수해, 한파 및 설해로 인한 피해 및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공제신청을 한다.

가. 대상 : 학교건물, 취득단가 100만원 이상의 물품, 도서, 건물의 부속물
(급수대, 뿔스, 조희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나. 보상책임기간 : 차년도 1월1일 0시~12월31일 24시까지(1년간)

다. 신청방법: 학교장->교육장->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상황통보 주요내용

● 재난상황통보 주요내용

- 학교명 및 회원명
- 재난 발생일시
- 소재지
- 재난원인 및 경위
- 공제가입 현황
- 피해내역, 규모, 정도
- 피해액 및 복구소요액 등

● 해당 서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알림서비스 내 정보자료실 (별지 제7-1호)

재난 상황조사서							
1. 재난 학교명 : (인쇄:)							
2. 주소 제 지 :							
3. 재난 일시 :							
4. 재난 종류 : 화재, 태풍, 홍수, 중수, 폭설, 해일, 폭설, 붕괴, 폭발, 한파							
5. 재난원인 및 경위 : (이하행락에 의하여 기술평)							
6. 피해 내용 :							
가. 인명 피해 : (피해자 인적사항 및 손해정도) (단위: 명, 천명)							
인명	건물	구조	인력	가입신청	피해상황	피해액	복구비
번호	건물명	종류	년도	실/층	가입금액	실/층	피해내역
다. 무속물 피해 (단위: 천원)							
종명/구적	신축일	구적 및 구조	가입금액	피해 수량	피해정도	피해액	복구비 산정액
라. 출몰 피해 (단위: 천원)							
종명/구적	취득일	운영부시/일	가입금액	피해 수량	피해정도	피해액	복구비 산정액
7. 재난 복구 대책 :							
8. 재난 관련 문명 면도 :							
9. 재난 현장 사진 :							
10. 기타 참고사항 :							

공제급여 신청서류

재난복구비	신체손해 배상금	
	부상/장해	사망
1. 재난복구비 지급신청서	1. 신체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서 (신청공문 별도)	1. 신체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서 (신청공문 별도)
2. 재난상황조사서	2. 진단서	2. 진단서 또는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가입내역(해당물건)	3. 재학(직)증명서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용도 : 보상금신청용)
4. 화재증명원(화재에 한함)	4. 주민등록초(등)본	4. 재학(직)증명서
5. 건축물 관리대장 (부속물과 물품은 재산대장)	5. 청구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5. 주민등록초(등)본
6. 건물평면도(치수기재)		6. 청구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7. 복구비 산출내역 (공사원가계산서, 견적서 등)		7. 상속자 합의서
8. 현장사진		
9. 은행계좌번호		
10. 기타 참고자료		

3. 피해보상 청구 등

가.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구분	당연가입
대상	- 우리학교 학생(병설유치원 포함)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가입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나. 공제급여 지급 대상사고

-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다음의 질병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日射病)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